

#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

1999. 3. 27  
내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3월 18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3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0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  - 제1차(99. 3. 26) 내무위원회 상정
 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홍보선)

### 가. 제안이유

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별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·직무능률 향상·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98. 2. 24일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 및 산하기관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하고,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(안 제2조 제1항, 제2항).

- 기관운영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위하여 지휘·감독의 직책이나 인사·예산·경리·물품출납·비서·기밀·보안·경비·자동차운전·협의회업무담당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(안 제3조).
-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고,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7일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,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봄(안 제4조).
- 협의회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9인이내로 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, 협의회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함(안 제14조)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유장상)

본 제정조례(안)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이 1998년 2월 24일 법률 제5,516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